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위한 기관의 자율성 확대, 의무직렬 임기제 정원 비율 상향, 벤처형 조직 종료에 따른 보조·보좌기관의 장 직급 조정 등 정부조직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제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3. 6. 9. ~ 6.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표시할”을 “정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훈령·예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4조제5항 본문 중 “총리령·부령”을 “총리령·부령(총리령·부령을 둘 수 없는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계급별 정원에 의무직렬이 포함된 경우에는 의무직렬은 의무직렬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의무직렬 이외 직렬은 의무직렬을 제외한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총리령·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4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훈령·예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직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정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 및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9조제3항 중 “총리령 또는 부령”을 “총리령 또는 부령(총리령·부령을 둘 수 없는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훈령·예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직제 등) ① (생략)	제4조(직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2의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제 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 ----- ----- ----- ----- ----- ----- 정할 -----.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훈령·예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①~④ (생략)	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급별 또는 직무등급(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제외한다)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총리령	⑤ ----- ----- ----- ----- ----- ----- 총리령

· 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의무직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정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 및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⑥ (생략)

<신 설>

<신 설>

· 부령(총리령 · 부령을 둘 수
없는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훈령
· 예규 및 그 밖의 방법을 포함
한다.)-----

----- . 다만, 계급별 정원에 의무직렬이 포함된 경우에는 의무직렬은 의무직렬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의무직렬 이외 직렬은 의무직렬을 제외한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총리령·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훈령·예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직
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

제29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② (생략) ③ 제17조의3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에는 <u>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u> ④ (생략) ⑤ 제3항에 따른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4급 정원을 <u>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4급 정원은 중앙행정기관별 직제 등에 따른 4급 정원의 상한에 포함하지 않는다.</u> ⑥ (생략)	<u>를 수행하는 정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 및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u> 제29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총리령 또는 부령(총리령·부령을 둘 수 없는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을 포함한다.)</u>----- -----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라 훈령·예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6